

# 201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 1. 도입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특성을 저위험·고보상으로 규정하고 성과 및 생산성과 연계된 보수체계로 개편하고자 하였음.
  -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변화는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 성과연봉제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확대를 통해 진행되었음.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주요 임금정책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2009년 2월 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입직원 및 기존직원들의 퇴사를 발생시키고,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보였음.
  - 정부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확대·강화하면서 개별 기관은 경영평가에 과도하게 역량을 투입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격차 및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임금실태를 검토함으로써 공공기관 임금특성과 정부의 임금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함.
  - 우선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임금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입직원 임금,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를 다루고자 함.
  
- 공공기관 임금실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3년 1월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 중 285개 기관을 분석함.
  - 2013년 4월에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는 2012년도 공공기관의 실태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2013년 1월에 신규 지정된 10개 기관을 제외함.

## 2. 공공기관 현황과 분석대상

### □ 공공기관 개념 및 유형

-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함.

<표> 공공기관 지정 요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2013년 295개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 178개로 구성됨.

<표> 공공기관 유형분류

| 구분      | 내 용  |
|---------|--|
|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 시장형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 · 준시장형  | 시장형 공기업 이 아닌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 ·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 □ 공공기관 현황

○ 2013년 1월 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95개로서 전년도에 비해 7개 기관이 증가함.

-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공공기관 지정현황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신규   |       | 7     | 9     | 19    | 8     | 7     | 10    |
| 지정해제 |       |       | 17    | 10    | 6     | 3     | 3     |
| 통폐합  |       |       |       | 21    | 1     | 2     |       |
| 계    | 298   | 305   | 297   | 285   | 286   | 288   | 295   |

〈표〉 공공기관 유형별 현황

|             | 2011년 | 2012년 |
|-------------|-------|-------|
| 시장형 공기업     | 14    | 14    |
| 준시장형 공기업    | 14    | 16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7    | 17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65    | 70    |
| 기타공공기관      | 176   | 178   |
| 합계          | 286   | 295   |

□ 분석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사업, 예산, 인력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가짐.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5개 영역에서 34개 항목(120여개 세부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항목별로 알리오시스템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음.
  - 정기공시는 매년(4월말), 반기(4월말, 10월말),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이루어짐.
  - 수시공시는 기관별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알리오 시스템에서 2013년 4월 말에 공개된 데이터는 2012년도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본 글에서 2013년 1월 말 기준의 295개 공공기관 중 2013년에 신규 지정된 10개 기관을 제외한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아울러, 2012년 1월 말 기준의 286개 공공기관 중 신규 지정된 5개 기관, 흡수·통합된 기관 2개 기관을 제외한 27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공공기관 임금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3. 직원 임금

#### 1) 평균임금

○ 공공기관의 임금인상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 2012년 평균임금 6천 2백만 원이고, 전년 대비 2.6% 인상되었음.

- 공공기관 유형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이 7,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준시장형 공기업(6,900만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6,800만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100만원), 기타공공기관(6,000만원) 순서로 나타남.

<표>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

(단위: 백만원)

| 기관유형        | 2011년 | 2012년 | 금액 | 비율(%) |
|-------------|-------|-------|----|-------|
| 시장형 공기업     | 75    | 76    | 1  | 0.8%  |
| 준시장형 공기업    | 67    | 69    | 2  | 2.5%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65    | 68    | 3  | 4.3%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60    | 61    | 1  | 1.5%  |
| 기타공공기관      | 58    | 60    | 2  | 2.9%  |
| 합계          | 60    | 62    | 2  | 2.6%  |

<표> 공공기관 직원 평균 근속년수

|             | 2011년 | 2012년 |
|-------------|-------|-------|
| 시장형 공기업     | 14.04 | 13.97 |
| 준시장형 공기업    | 15.86 | 15.93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4.28 | 14.41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1.76 | 11.56 |
| 기타공공기관      | 10.16 | 9.86  |
| 합계          | 11.26 | 11.09 |

○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는 2012년 0.248로 2011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다만 시장형 공기업(0.065→0.07)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0.228→0.231)은 증가하였음.

<표> 공공기관 직원 평균임금의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단위: 백만원)

| 기관유형        | 변이계수  |       | 최소값   |       | 최대값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시장형 공기업     | 0.065 | 0.070 | 66    | 68    | 82    | 86    |
| 준시장형 공기업    | 0.162 | 0.152 | 46    | 49    | 88    | 88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0.151 | 0.147 | 48    | 50    | 84    | 85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0.228 | 0.231 | 36    | 34    | 109   | 114   |
| 기타공공기관      | 0.280 | 0.273 | 20    | 20    | 100   | 99    |
| 합계          | 0.254 | 0.248 | 20    | 20    | 109   | 114   |

## 2) 임금구성

○ 임금구성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성과형 급여(경영평가 성과급+기타성과상여금)의 비중은 유지됨.

- 이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201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부터 공공기관 직원의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 월봉의 100%,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조정된 것에서 기인함.
- 2012년 공공기관의 성과형 급여의 비중은 시장형 공기업이 20.8%, 준시장형 공기업이 20.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1.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11.4%임.

<표> 공공기관 직원 임금구성 현황

| 기관유형           | 임금구성     | 2011년       |        | 2012년      |        |
|----------------|----------|-------------|--------|------------|--------|
|                |          | 금액<br>(백만원) | 비율     | 금액<br>(천원) | 비율     |
| 시장형<br>공기업     | 1인당평균보수액 | 75          | 100.0% | 75,898     | 100.0% |
|                | 기본급      | 45          | 59.1%  | 46,068     | 60.7%  |
|                | 고정수당     | 5           | 7.1%   | 5,423      | 7.1%   |
|                | 실적수당     | 6           | 8.3%   | 6,120      | 8.1%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3           | 3.9%   | 2,525      | 3.3%   |
|                | 경평상여금    | 9           | 11.4%  | 6,740      | 8.9%   |
|                | 기타성과상여금  | 8           | 10.1%  | 9,022      | 11.9%  |
| 준시장형<br>공기업    | 1인당평균보수액 | 67          | 100.0% | 68,667     | 100.0% |
|                | 기본급      | 43          | 64.4%  | 43,225     | 62.9%  |
|                | 고정수당     | 3           | 4.6%   | 3,024      | 4.4%   |
|                | 실적수당     | 4           | 6.0%   | 5,040      | 7.3%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3           | 4.5%   | 3,301      | 4.8%   |
|                | 경평상여금    | 13          | 18.6%  | 5,710      | 8.3%   |
|                | 기타성과상여금  | 1           | 1.7%   | 8,367      | 12.2%  |
| 기금관리형<br>준정부기관 | 1인당평균보수액 | 65          | 100.0% | 68,180     | 100.0% |
|                | 기본급      | 46          | 70.3%  | 46,357     | 68.0%  |
|                | 고정수당     | 7           | 11.1%  | 7,644      | 11.2%  |
|                | 실적수당     | 4           | 6.1%   | 4,098      | 6.0%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2           | 3.2%   | 2,232      | 3.3%   |
|                | 경평상여금    | 4           | 5.5%   | 2,285      | 3.4%   |
|                | 기타성과상여금  | 2           | 3.3%   | 5,565      | 8.2%   |
| 위탁집행형<br>준정부기관 | 1인당평균보수액 | 60          | 100.0% | 60,668     | 100.0% |
|                | 기본급      | 41          | 68.7%  | 42,598     | 70.2%  |
|                | 고정수당     | 5           | 8.9%   | 5,042      | 8.3%   |
|                | 실적수당     | 3           | 5.8%   | 3,289      | 5.4%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3           | 5.1%   | 2,837      | 4.7%   |
|                | 경평상여금    | 4           | 6.0%   | 1,824      | 3.0%   |
|                | 기타성과상여금  | 3           | 5.2%   | 5,078      | 8.4%   |
| 기타공공기관         | 1인당평균보수액 | 58          | 100.0% | 60,160     | 100.0% |
|                | 기본급      | 41          | 70.9%  | 42,875     | 71.3%  |
|                | 고정수당     | 5           | 9.1%   | 5,453      | 9.1%   |
|                | 실적수당     | 3           | 4.5%   | 2,714      | 4.5%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2           | 4.1%   | 2,560      | 4.3%   |
|                | 경평상여금    | -           | 0.0%   | 11         | 0.0%   |
|                | 기타성과상여금  | 7           | 11.4%  | 6,547      | 10.9%  |
| 합계             | 1인당평균보수액 | 60          | 100.0% | 62,012     | 100.0% |
|                | 기본급      | 42          | 69.3%  | 43,192     | 69.7%  |
|                | 고정수당     | 5           | 8.8%   | 5,346      | 8.6%   |
|                | 실적수당     | 3           | 5.2%   | 3,234      | 5.2%   |
|                | 급여성복리후생비 | 3           | 4.3%   | 2,647      | 4.3%   |
|                | 경평상여금    | 2           | 3.5%   | 1,236      | 2.0%   |
|                | 기타성과상여금  | 5           | 8.8%   | 6,356      | 10.3%  |

#### 4. 신입직원 초임

- 정부는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신입직원 초임 삭감 방안은 116개 공공기관 신입직원 평균보수가 2,936만원으로 민간기업의 신입직원 임금보다 높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sup>1)</sup>.
  -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완화시킨다는 목표로 신입직원의 기본연봉이 2천만 원 이상인 기관은 보수수준에 따라 삭감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부의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 삭감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첫째, 신입직원 초임이 2천만 원 미만인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재함.
  - 둘째, 한 기관 내 두 개의 임금체계를 만들게 함으로서 직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였음.
  - 셋째,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입직원 초임삭감으로 인해 신규 직원의 퇴사는 물론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이 업무 부하가 심해져 연속적인 퇴사를 유발하였음.
  
- 정부는 2011년 9월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신입직원 초임 삭감에 따른 직원 간 임금격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지침에 따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 공공기관 신입직원 평균임금은 2,95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인상되었음.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초과하여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신입직원 초임에 예외 적용되는 지침에 근거함.
  
- 정부의 2009년 대졸초임 삭감방안 이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을 비교해 보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격차는 축소되었음. 하지만 공공기관 내 신입직원의 임금격차는 증가하였고, 여전히 대졸 초임이 2천만 원 미만인 기관이 존재함.
  - 정부가 2009년 대졸 초임 삭감 방안을 제시했을 당시 2008년 민간기업 대졸 초임은 2,441만원이고 공공기관은 2,936만원이었으나, 2012년 민간기업 대졸

1) 정부는 신입직원의 평균보수를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한 값으로 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평균보수는 2,441만원으로 경총의 「2008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초입은 3,065만원이고 공공기관 2,956만원임.

-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임금 변이계수는 2011년 0.157에서 2012년 0.175로 높아졌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만 임금 변이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신입직원 평균임금이 2천만 원 미만인 공공기관은 2011년 13곳에서 2012년 9곳으로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곳이 여전히 존재함.

<표> 공공기관 신입직원 평균임금

(단위: 천원)

| 기관유형        | 2011년  | 2012년  | 변화    |       |
|-------------|--------|--------|-------|-------|
|             |        |        | 금액    | 비율    |
| 시장형 공기업     | 28,447 | 31,192 | 2,746 | 9.7%  |
| 준시장형 공기업    | 27,099 | 30,046 | 2,947 | 10.9%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29,488 | 32,085 | 2,597 | 8.8%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27,075 | 29,653 | 2,578 | 9.5%  |
| 기타공공기관      | 26,587 | 29,088 | 2,501 | 9.4%  |
| 합계          | 26,995 | 29,561 | 2,566 | 9.5%  |

<표>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입의 변이계수, 최소값, 최대값

(단위: 천원)

|             | 변이계수  |       | 최소값    |        | 최대값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시장형 공기업     | 0.069 | 0.092 | 25,362 | 28,221 | 33,244 | 39,176 |
| 준시장형 공기업    | 0.095 | 0.123 | 22,522 | 25,157 | 31,711 | 36,916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0.151 | 0.148 | 20,580 | 24,764 | 36,953 | 42,778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0.145 | 0.160 | 19,736 | 21,110 | 37,652 | 42,827 |
| 기타공공기관      | 0.169 | 0.191 | 16,550 | 16,965 | 37,402 | 42,948 |
| 합계          | 0.157 | 0.175 | 16,550 | 16,965 | 37,652 | 42,948 |

<표> 공공기관 신입직원 평균임금 2천만 원 미만 공공기관 수

|             | 2011년 | 2012년 |
|-------------|-------|-------|
| 시장형 공기업     |       |       |
| 준시장형 공기업    |       |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     |       |
| 기타공공기관      | 12    | 9     |
| 합계          | 13    | 9     |

## 5. 경영평가 성과급

### □ 경영평가 개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우수·부진기관에 대한 조치 등에 활용됨.
-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함.
- 201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부터 공공기관 직원의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된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은 직원들의 기존 상여금 또는 연봉에서 전환된 금액(‘전환금’)이 성과급의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구성되었으나<sup>2)</sup>,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기존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재전환하도록 변경됨.

### □ 경영평가 성과급 격차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기간 및 평가단 운영, 평가지표, 평가결과 활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더불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성과급의 격차는 기관 유형에 따른 성과급 비율,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마지막으로 기관 내 차등지급에서 발생함<sup>3)</sup>.
-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 비율이 달리 설계되어 있음.
  - 201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공기업의 경우 최대 성과급 비율이 250%이지만, 준정부기관의 최대 성과급 비율은 100%임. 경영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2)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200%, 공기업은 250%, 준정부기관은 100%를 자체성과급, 고정상여 등 기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500%(최하 200%), 공기업은 500%(최하 250%), 준정부기관은 200%(최하 100%)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음.

3) 2009년도 경영평가 성과급부터 기관장 평가 결과가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에 반영되고 있음. 기관장 평가는 평가결과가 ‘미흡’, ‘아주미흡’인 경우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에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과급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음.

받는 ‘추가금’ 비율(규모)이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 공공기관 간 격차를 야기함.

○ 경영평가 성과급을 기관 자체 근무실적평가에 근거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격차가 발생함.

- 정부는 개인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산지침으로 내렸고,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에서부터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 비율,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격차를 명시하고 있음.

□ 경영평가 성과급 현황

○ 2012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는 기관은 96개로서 대상 기관의 88.1%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았고, 2011년도 대상 기관의 99.0%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음.

<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기관

|             | 2011년  |        | 2012년  |        |
|-------------|--------|--------|--------|--------|
|             | 기관수(개) | 비율     | 기관수(개) | 비율     |
| 시장형 공기업     | 8      | 100.0% | 14     | 100.0% |
| 준시장형 공기업    | 13     | 92.9%  | 13     | 92.9%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7     | 100.0% | 16     | 94.1%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60     | 100.0% | 53     | 82.8%  |
| 계           | 98     | 99.0%  | 96     | 88.1%  |

주: 각 년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비율은 미지급대상을 고려하여 산정함. 예를 들어, 2012년에 지정된 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기관은 8개이지만 나머지 6개 기관은 2010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기관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비율을 100%로 표시함.

○ 2012년도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 3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아졌음.

- 이는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기존 전환금을 자체성과급으로 재전환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전환금 명목으로 받던 경영평가 성과급이 없어졌기 때문임.

<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단위: 백만원)

|             | 평균    |       | 최소값   |       | 최대값   |       |
|-------------|-------|-------|-------|-------|-------|-------|
|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2011년 | 2012년 |
| 시장형 공기업     | 15    | 7     | 9     | 1     | 19    | 11    |
| 준시장형 공기업    | 13    | 7     | 0     | 0     | 21    | 16    |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4     | 3     | 1     | 0     | 5     | 5     |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4     | 2     | 1     | 0     | 14    | 14    |
| 전체          | 6     | 3     | 0     | 0     | 21    | 16    |

6. 합의

- 공공기관 임금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확인됨.
  - 첫째, 2012년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임금은 6,200만원이고, 임금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음.
  - 둘째, 2012년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구성은 경영평가 성과급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성과형 급여(경영평가 성과급+기타성과 상여금)의 비중은 유지됨.
  - 셋째, 2012년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은 평균 2,95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9.5% 인상되었고, 신입직원의 임금격차는 커졌음. 또한 신입직원 초임이 2천만 원 미만인 기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넷째, 201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은 정부의 예산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증가함.
  
- 이상의 공공기관 임금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형 임금이 임금구성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성과형 임금체계는 공공부문의 임금정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있지만(Marshden David & Richard Belfield, 2005; OECD, 2005, 김유선 외, 200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성과형 임금은 확대 추세를 보여 왔음.
  -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전환금’이 개별 기관의 자체성과급으로 전환되었는데,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서 자체성과급의 지급횟수, 차등 등급 수,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차등수준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 내 개별

직원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획일적 공공기관 임금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 신입직원의 퇴사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채,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

- 특히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 정책은 대졸 초임이 2천만 원 이상인 기관에 적용되었는데, 현재에도 2천만 원 미만이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 기획재정부, 2011b,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임금수준 높아」 (2011.8.19) 보도자료.
- 김유선·노광표·유성규·이상훈·이정봉, 2012, 『공공기관 임금정책 연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 김철·김경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공공운수연맹.
- 박용석, 20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 및 문제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안평가들 개발 연구 1권』, 사회공공연구소.

#별첨1. 2013년도 공공기관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 시장형<br>공기업<br>(14)     | (지경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br>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br>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br>(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 준시장형<br>공기업<br>(16)    | (재정부) 한국조폐공사<br>(문화부) 한국관광공사<br>(농식품부) 한국마사회<br>(지경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br>(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br>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br><b>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b><br>(방통위) <b>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b>   |
| 기금관리형<br>준정부기관<br>(17) | (교과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br>(행안부) 공무원연금공단<br>(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br>한국언론진흥재단<br>(지경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br>(복지부) 국민연금공단<br>(고용부) 근로복지공단<br>(금융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br>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br>(방통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br>(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 위탁집행형<br>준정부기관<br>(70) |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br>(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br>(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br>(농식품부) <b>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b>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br><b>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b>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br>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b>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b><br>(지경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br>우체국물류지원단, <b>(재)우체국금융개발원</b> , 한국가스안전공사,<br>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br>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br>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br>한국전력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br>(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br>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b>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b><br>(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br>한국장애인고용공단, <b>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b><br>(여가부) <b>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b>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br>(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br>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br>(공정위) 한국소비자원 |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                     | <p>(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br/>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br/> (안전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br/>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br/>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br/> (경찰청) 도로교통공단<br/> (방재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br/>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br/>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br/> <b>(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b></p>  |
| 기타<br>공공기관<br>(178) | <p>(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br/>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br/> (교과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b>국가평생교육진흥원</b>,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기초과학연구원<br/>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br/>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br/>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br/>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br/>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br/> (문화부) <b>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b>,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b>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b>,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재)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b>세종학당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b><br/>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어촌어항협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br/> (지정부)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b>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p> |

| 구 분                 | (주무기관) 기관명  |
|---------------------|---|
| 기타<br>공공기관<br>(178) | <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b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b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br/>             (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br/>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br/>             한국건강증진재단, <b>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b><br/>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br/>             (고용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b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b>건설근로자공제회</b><br/> <b>(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br/>             (국토부)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br/>             코레일관광개발(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주식회사<br/>             인천항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br/>             향로표지기술협회, <b>한국해양과학기술원</b><br/>             (금융위)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br/>             (국과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             (안전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br/>             (보훈처) 88관광개발(주)<br/>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br/>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br/>             (산림청) 녹색사업단<br/>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br/>             창업진흥원<br/>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b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br/>             (식약청) 한국회귀의약품센터, <b>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b> </p> |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2013.1.31)

#별첨2. 공공기관 지정변동 현황

|       | 기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09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타공공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2010년 | 한국석유공사         |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준시장형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
|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준시장형공기업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 2011년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       | 한국중부발전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한국수력원자력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한국서부발전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한국동서발전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한국남부발전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한국남동발전         |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
|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2012년 | 여수광양항만공사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
|       | 소상공인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2013년 | 울산항만공사         |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
|       | 해양환경관리공단       | 기타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별첨3. 공공기관 연도별 변동 현황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전체        | 298   | 305   | 297  | 285  |   |
| 신규        |       | 7   | 9  | 19   |   |
| 해제·폐지     |       |   | 17   | 10   |   |
| 통폐합<br>결과 |       |   |  | 21<br>36→15  |   |
| 신규        |       |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br>전략물자관리원<br>(재)우정복지협력회<br>재료연구소<br>울산항만공사<br>㈜부산항보안공사<br>인천항만보안㈜ | 향로표지기술협회<br>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br>한국거래소<br>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br>정부법무공단<br>한국사회복지협의회<br>한국노인인력개발원<br>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br>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한국장학재단<br>평생교육진흥원<br>(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br>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br>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br>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br>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br>농업기술실용화재단<br>한국지식재산연구원<br>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br>한국정책금융공사<br>산은금융지주<br>(재)체육인재육성재단<br>게임플러그위원회<br>재단법인 국악방송<br>태권도진흥재단<br>소상공인진흥원<br>한국희귀의약품센터<br>국립중앙의료원 |   |
|           |       |   | 극지연구소<br>국가핵융합연구소<br>고등과학원<br>공공기술연구원<br>코레일애드컴㈜<br>기보캐피탈㈜<br>금융감독원<br>한국노동교육원<br>농림기술관리센터<br>재단법인 서울예술단<br>(재)국립합창단<br>(재)국립오페라단<br>(재)국립발레단<br>정보통신윤리위원회<br>안정성평가연구소<br>재료연구소<br>국가보안기술연구소 | 부산항부두관리공사<br>인천항부두관리공사<br>㈜한국토지신탁<br>㈜농지개발<br>대한에이치에방협회<br>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br>㈜정리금융공사<br>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br>산은캐피탈주식회사<br>한국자산신탁(주)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br>한국토지공사<br>한국연구재단<br>한국정보화진흥원<br>한국콘텐츠진흥원<br>한국산업기술진흥원<br>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br>정보통신산업진흥원<br>한국인터넷진흥원<br>한국환경산업기술원<br>한국환경공단<br>한국언론진흥재단<br>코레일테크㈜<br>코레일네트웍스㈜<br>한국저작권위원회<br>근로복지공단   | 대한주택공사,<br>한국토지공사<br>한국과학재단,<br>한국학술진흥재단,<br>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br>한국정보사회진흥원,<br>한국정보문화진흥원<br>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br>(재)방송영상산업진흥원,<br>한국게임산업진흥원<br>한국산업기술평가원,<br>한국산업기술재단,<br>부품소재산업진흥원,<br>한국기술거래소<br>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br>한국전자거래진흥원,<br>정보통신연구진흥원<br>한국정보보호진흥원,<br>한국인터넷진흥원,<br>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br>환경기술진흥원,<br>친환경상품진흥원<br>한국환경자원공사,<br>환경관리공단<br>한국언론재단,<br>신문유통원,<br>신문발전위원회<br>코레일엔지니어링㈜,<br>코레일트랙㈜,<br>코레일전기㈜<br>코레일네트웍스㈜,<br>코레일개발㈜<br>저작권위원회,<br>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br>근로복지공단,<br>산재의료원 |

| 구분        |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 전체        | 286          |                      | 286         |                            | 295         |
| 신규        | 8            |                      | 5           |                            | 10          |
| 해제·폐지     | 6            |                      | 3           |                            | 3           |
| 통폐합<br>결과 | 1<br>2→1     |                      | 2<br>4→2    |                            | 0           |
| 신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한국보육진흥원     |                            | 세종학당재단      |
|           | 창업진흥원        |                      | 한국건강증진재단    |                            | (재)한국문화정보센터 |
|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           | (재)한국공연예술센터  |                      | 해양환경관리공단    |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수산자원사업단      |                      |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              |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 해제·<br>폐지 | IBK 캐피탈      |                      | 산은금융지주      |                            | 호국장학재단      |
|           | IBK 신용정보     |                      | 한국산업은행      |                            | 한국생산성본부     |
|           | IBK 시스템      |                      | 중소기업은행      |                            | 한국기업데이터㈜    |
|           | 대한결핵협회       |                      |             |                            |             |
|           | 한국전파연구원      |                      |             |                            |             |
|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                            |             |
| 통폐합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수련원,<br>한국청소년센터 | 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br>노사공동고용지원사업단     |             |
|           |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br>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